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

이우경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uj_lee@kdi.re.kr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미관계도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절차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UN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UN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를 지원·감시하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UN 대북제재의 경우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해왔으며, UN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이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보고서만을 기반으로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대북제재 이행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자료는 UN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내용과 이행보고서 제출국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대북제재의 주요내용과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에서는 UN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내용,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본 자료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UN 안보리 이행보고서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

I. UN대북제재 주요내용

UN안보리 대북제재는 UN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태의 대북제재이다. 대북제재위원회라고도 불리는 1718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는 2006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며, 현재 8명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로 구성되었다. UN대북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확산방지(non-proliferation)이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면서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 채택되었으며(결의안 825호) 이후 두 개의 결의안(1540호, 1695호)을 거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되었다.

2006년부터 현재(2018년 9월)까지 총 19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본장에서는 1718호 이후 채택된 결의안 중 전문가패널 연장 목적의 결의안 9개¹⁾를 제외한 10개의 결의안 관련 주요내용을 제공한다.

UN안보리 대북제재는 UN헌장(UN Charter) 7장 41조에 근거하는데, UN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침해, 공격행위에 대해 비군사적 조치 결정할 수 있으며, UN회원국에게 이와 같은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여기에서 조치는 완전 또는 부분적 경제관계 중단과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라디오 및 기타 통신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이다. <표 2>는 2006년 1718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UN대북제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표 1> 대북제재 결의안 관련 UN헌장

헌장	주요내용
헌장 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에 대한 위협, 침해, 공격행위에 대한 조치 - 41조: UN안보리는 비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으며, UN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행을 요구할 수 있음. 조치에는 완전 또는 부분적 경제관계 중단 및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라디오 및 기타 통신 중단; 외교관계 단절 포함. <p>(The Security Council may decide what measures not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and it may call upon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apply such measures. These may include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of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p>

자료: UN, 'UN Charter',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ndex.html>, 검색일: 2018. 9. 18.

1) 결의안 1887호(2009년); 1928호(2010년); 1985호(2011년); 2050호(2012호); 2141호(2014년); 2207호(2015년); 2276호(2016년); 2345호(2017년); 2407호(2018년)

<표 2>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주요내용

	결의안	채택일	주요내용
1	1718호	2006.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전문, 본문 17개로 구성 · NPT탈퇴 철회 요구 · (재래식무기 수출 및 조달 중지 결정) 원산지 상관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탱크, 장갑전투차량, 다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헬기, 미사일,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 부품 등 공급, 판매, 이전 금지 · (금융자산 동결) 핵·미사일, WMD관련 연루자 및 지원자 관련 금융 자산 및 경제자원 즉각 동결
2	1874호	2009.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전문, 본문 34개로 구성 · (무기 제재) 소형무기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및 금융거래, 기술훈련 등도 제재대상에 적용; 소형무기 판매, 공급, 이전은 최소 5일전 위원회에 통보 의무화 · (북한발 화물검색) 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WMD공급, 판매, 이전, 수출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될 경우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 검색 촉구 ·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통제) WMD관련 품목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수출 적발 시 물품 압류 처분 요청; 금지품목 운반이 의심될 경우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선박지원 서비스" 금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인도주의적 목적 · (핵·미사일, WMD 관련 금융서비스 금지) 회원국의 관할권 내 금융·재원을 동결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적용
3	2087호	2013.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전문, 본문 20개, 부속서 2개로 구성 · (벌크캐시) 제재회피를 위한 북한의 대량현금(벌크캐시)사용을 언급 · (제재 대상 추가) 개인 4명 단체 6곳 · (선박) 북한선박이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발간 지시 · (금융기관 및 개인 감시) 자국 내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북한기관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감시 및 강화된 주의 촉구
4	2094호	2013.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전문, 본문 37개, 부속서 4개로 구성 · (화물검색) 북한행발 화물, 북한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화물 검색; 북한선박 검색거부 시 회원국은 자국항에 대한 입항 여부 결정 · (항공) 증 이전 또는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의 자국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비상사태 제외 · (금융서비스 제한) 벌크캐시(대량현금)을 포함한 금융 자원·재원 제공 방식 여부 결정; 북한 내 사무소 또는 은행계좌 개설 금지를 위한 조치 요구 · (공적금융지원 금지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단체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제공 금지 결정 · (제재 대상 추가) 개인 3명, 기관 2개
5	2270호	2016.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전문, 본문 52개, 부속서 4개로 구성 · (무기거래)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수비·서비스 목적의 무기운송 결의 위반 명확화; 군사관련 훈련,자문 금지;캐치올 수출통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인도주의·민생목적 * 캐치올(catch-all): 통제대상이 아니어도 재래식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통제하는 제도 · (확산네트워크) 제재회피 또는 위반연루 북한 외교관, 공관 추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으로 대북제재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 추방 의무화 * 예외: UN관련 목적, 사법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위원회 건별 결정 · (해운, 항공운송) 북한행발 전수조사 의무화; 항공기·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 제재대상 소유, 운영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국적 선박 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민생목적, 불법행위 기여방지 노력 위원회 사전통지 · (제재 대상 지정) 개인 16명, 단체 12곳 ·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기술협력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관련 캐치올 수출통제 의무화 (대외교역) WMD개발 연류시 석탄, 철, 수출금지 * 예외: WMD와 무관한 민생목적, 외국인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단, 위원회에 통보) (대북 항공유 판매, 공급 금지) * 예외: 인도주의적, 제재위 사전 허가시, 북한 민간기 해외 급유 (사치품) 급수대상 사치품 목록 확대; 손목시계,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스노우빌, 납 크리스탈 제재 명단에 추가 (주민생활 우려) 북한주민이 처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제재 대상 추가) 개인 16명, 단체 12곳
6	2321호	2016.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10개, 본문 50개, 부속서 5개로 구성 (외교부) (석탄수출 상한제) 석탄 수출 연간 4억달러 또는 750톤 초과 금지 * 예외: WMD와 무관하거나 북한주민의 민생목적인 석탄수출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관련 제한) 고등산업공학, 전기공학 등 특별 교육 및 훈련 금지 분야 추가; 과학·기술협력 금지, 이중용도 품목 이전 금지 (검색 및 차단)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북한인의 여행을 수화물도 검색 대상임을 강조; 제재대상 공항 경유 금지, 제재위원회에게 의심선박에 대한 귀국취소(de-flagging);, 항구 입항 명령, 자산동결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운송)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 금지 * 민생목적 예외 내용 삭제: 북한 내 선박 등록 및 기타 서비스 제공, 항공기 대여 및 승무원 제공 (대외교역) 은, 동, 아연, 니켈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 조형물의 공급, 판매, 이전 금지; 신규 헬리콥터, 선박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금융) UN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 이내 기존 사무소 거래 폐쇄; 무역관련 금융지원 금지(공적·사적); 북한을 대리하는 개인에 대하여 추방 조치; WMD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해 우려 표명 (외교활동) 회원국의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WMD관련자의 자국내 입국·경유 거부, 북한 공관원당 은행계좌 1개로 제한; 외교업무 이외 활동 금지 강조;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창출 활동 금지 (주민생활우려)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우려 표명 (통제품목 및 사치품 확대) 핵·미사일, 화학생물무기 관련 18종 추가 (제재 대상 개인, 단체확대)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확대
7	2356호	2017.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전문, 5개 조항, 부속서 1개로 구성 (제재대상 추가) 개인 14명, 단체 4개 추가
8	2371호	2017.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전문, 본문 30개, 부속서 2으로 구성 (철, 석탄, 철광석 수출 전면금지) 민생품목에 대한 예외조치 없음;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허가 제한) 결의안 채택 이후 신규노동 허가 건수 제한 (주민생활우려)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언급; 북한의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대한 조사결과 언급; 북한주민의 고통에 우려 표명 (신규 합작투자 금지)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 합작사업 확대 금지 (제재대상 추가) 개인 9명, 단체 4개 추가
9	2375호	2017.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10개, 본문 33개, 부속서 2개로 구성 (대북유류공급제한) 연간 상한선 제시(2017년 10~12월 간 50만배럴/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대북유류공급량 현 수준에서 동결;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전면 금지 (섬유수출 금지) 모든 직물 및 의류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 수출 금지; 제재 이전의 계약에 대해선 결의안 채택 이후 90일 내 해당화물 수입 가능(관련 수입내용은 위원회에 135일 이내 보고 의무화)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기존노동자는 계약만료시점에서 발급 금지 (공해상 선박간 이전 금지) 금지품목(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수제지를 위한 선박 간 이전 조치 도입 · (합작사업 전면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관련 합작사업은 120일 이내 철수 의무화; * 예외: 인프라 관련 기존 합작사업(중국-북한 수력발전 사업, 라진-하산 프로젝트) · (제재대상 추가) 북한의 주요 당, 정 3개, 개인 1명 추가
10	2397호	2017.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7개, 본문 29개, 부속서 5개로 구성 · (유류공급 제한) 대북유류공급 제한(정유제품 공급 연간 상한선 기존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감소); 원유공급량 연간 400만배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회원국의 유류공급 내용 보고 의무화 · (해외노동자) UN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 북한송환 의무화 · (대북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 · (화물선 해상차단 조치강화) UN회원국과 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 나포, 검색, 억류하도록 의무화; 회원국들 간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교류 의무화 · (제재명단 추가)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자금조달 관련 개인 16명, 단체 1개 추가

자료: 외교부, 「북한 제1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결의 1718호」, 2006. 10. 4; 「북한 제2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결의」, 2009. 6. 12; 「북한 제3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결의 2094」, 2013. 3. 7;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UN 안보리 결의 2087호」, 2013. 1. 22; 「UN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2016. 3. 3;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1. 30; 「UN 안보리 결의 2356호」, 2017. 6. 3;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6. 12. 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2017. 9. 1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2017. 12. 26

II. UN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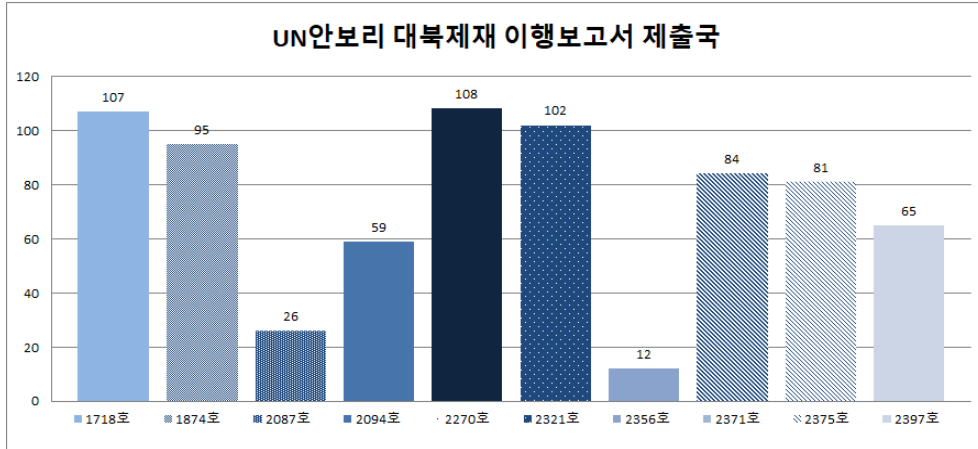
본장에서는 UN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미제출한 국가의 현황을 통해 UN대북제재에 대한 국가의 참여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UN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2018년 8월 28일자 목록에 따라 각 보고서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의 수는 [그림 1]과 같다. 북한을 제외한 UN회원국 192개 국가들 중 한번이라도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24개국이며,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총 68개국이다. 이행보고서 제출·미제출국가는 <부표 1>과 <부표 2>에 정리하여 제공한다.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을 지역으로 분류한다면 UN안보리결의안 10개(1718호~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지역은 서유럽 및 기타 그 다음이 동유럽이며,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프리카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8).²⁾

2) 지역별 이행보고서 제출 비중 기준

[그림 1]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기준 참여국가

(단위: 국가 수)



자료: UN Implementation Reports,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18. 9. 18).

<표 3> 지역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1718호~2397호)

(단위: 국가 수, %)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캐리비언		서유럽 및 기타		총 (국가 수)
	국가 수	(%)	국가 수	(%)	국가 수	(%)	국가 수	(%)	국가 수	(%)	
제출	23	(42.6)	35	(64.8)	22	(95.7)	16	(48.5)	28	(100)	124
미제출	31	(57.4)	19	(35.2)	1	(4.3)	17	(51.5)	0	(0)	68
계	54	(100)	54	(100)	23	(100)	33	(100)	28	(100)	192

주: 1) UN의 분류체계 사용함(www.un.org/depts/DGACM/RegionalGroups, 검색일: 2018. 9. 18)

2) 북한(아시아/태평양)을 제외한 UN회원국 192개국의 제출현황임.

자료: Implementation Reports,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18. 9. 18).

〈부표 1〉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

	국가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 (2016)	2356 (2017)	2371 (2017)	2375 (2017)	2397 (2017)	총
1	알바니아	1				1	1		1	1	1	6
2	알제리	1										1
3	안도라	1	1			1	1					4
4	앙골라					1	1	1	1	1		5
5	아르헨티나	1				1	1		1	1	1	6
6	아르메니아	1	1	1	1	1	1		1	1	1	9
7	호주	1	1		1	1	1		1	1		7
8	오스트리아	1	1	1	1	1	1		1	1	1	9
9	아제르바이잔	1	1	1	1	1						5
10	바레인	1			1	1	1	1	1	1		7
11	벨라루스	1	1		1	1	1		1	1	1	8
12	벨기에	1	1		1	1	1		1	1	1	8
13	베냉	1	1		1	1						4
14	보츠와나					1	1					2
15	브라질	1	1	1	1	1	1		1	1		8
16	브루나이	1	1			1	1					4
17	불가리아	1	1			1	1		1		1	6
18	부르키나파소	1	1									2
19	부룬디					1						1
20	캐나다	1	1			1	1		1	1	1	7
21	칠레	1	1	1		1	1		1	1	1	8
22	중국	1	1		1	1	1		1	1	1	8
23	콜롬비아	1	1		1	1	1		1	1	1	8
24	코스타리카					1						1
25	크로아티아	1	1				1			1		4
26	쿠바	1	1									2
27	키프로스	1	1	1	1	1	1		1	1	1	9
28	체코 공화국	1				1	1		1	1	1	6
29	덴마크	1	1	1	1	1	1		1	1	1	9
30	자부티	1	1	1	1	1	1					6
31	도미니카 공화국		1									1
32	에콰도르	1	1	1	1	1	1					6
33	이집트		1			1	1		1	1	1	6
34	에리트리아	1	1		1	1	1		1	1	1	8
35	에스토니아	1	1			1	1		1	1	1	7
36	에티오피아					1	1		1	1		4
37	적도 기니							1	1	1	1	4
38	핀란드	1	1			1	1		1	1	1	7
39	프랑스	1	1		1	1	1		1	1	1	8
40	그루지아	1	1			1	1		1	1	1	7
41	독일	1	1	1	1	1	1		1	1	1	9
42	그리스	1	1		1	1	1		1	1	1	8
43	과테말라	1	1	1	1	1	1	1	1	1	1	10
44	가이아나	1	1									2

45	헝가리	1	1			1	1		1	1	1	7
46	아이슬란드	1	1									2
47	인도	1	1			1	1		1	1	1	7
48	인도네시아	1				1	1		1	1		5
49	이라크					1	1		1	1	1	5
50	아일랜드	1	1			1	1					4
51	이스라엘	1	1			1	1		1	1	1	7
52	이탈리아	1	1		1	1	1		1	1	1	8
53	일본	1	1		1	1	1		1	1	1	8
54	요르단	1	1		1	1	1			1		6
55	카자흐스탄	1	1			1	1	1	1			6
56	대한민국	1	1		1	1	1		1	1	1	8
57	쿠웨이트	1	1	1	1	1	1	1	1			8
58	키르기스스탄	1				1	1	1	1	1		6
59	라오스		1			1	1		1	1	1	6
60	라트비아	1	1		1	1	1		1	1	1	8
61	레바논	1				1						2
62	리히텐슈타인	1	1			1	1		1	1	1	7
63	리투아니아	1	1		1	1	1		1	1	1	8
64	룩셈부르크	1	1		1	1						4
65	마다가스카르					1	1	1	1	1		5
66	말레이시아	1	1	1	1	1	1		1	1		8
67	몰디브	1										1
68	말타	1	1		1	1	1					5
69	마셜제도	1										1
70	모리셔스	1	1	1	1	1						5
71	멕시코	1	1		1	1	1		1	1	1	8
72	몰도바	1	1				1		1			4
73	모나코	1	1			1	1		1	1	1	7
74	몽골	1	1	1	1	1	1		1	1	1	9
75	몬테네그로	1	1	1	1	1	1	1	1	1	1	10
76	모로코	1	1	1	1	1	1		1	1		8
77	미얀마					1	1	1	1			3
78	나미비아	1	1	1	1	1	1					6
79	네덜란드	1	1		1	1	1		1	1	1	8
80	뉴질랜드	1	1		1	1	1		1	1	1	8
81	나이지리아	1	1									2
82	노르웨이	1	1			1	1		1	1	1	7
83	오만					1	1		1	1		4
84	파키스탄	1	1		1	1	1	1	1	1	1	9
85	파나마	1	1			1	1		1			5
86	파라과이								1	1		2
87	페루	1	1			1	1					4
88	필리핀	1	1		1	1	1		1	1	1	8
89	폴란드	1	1			1	1		1	1	1	7
90	포르투갈	1	1			1	1					4
91	카타르	1	1	1	1	1	1		1	1	1	9
92	루마니아	1	1			1	1			1	1	6
93	러시아	1	1		1	1	1		1	1	1	8

94	르완다	1	1	1	1	1	1	1	1	1		9
95	산마리노	1	1	1	1	1	1	1	1	1		7
96	사우디아라비아	1	1		1		1					4
97	세네갈	1	1		1	1	1		1	1		7
98	세르비아	1	1		1	1	1		1	1	1	8
99	싱가폴	1	1		1	1	1		1	1	1	8
100	슬로바키아	1	1			1	1		1	1	1	7
101	슬로베니아	1	1	1	1	1	1	1				7
102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1	1					4
103	스페인	1	1		1	1	1		1	1	1	8
104	스리랑카	1					1		1	1	1	5
105	수단	1	1	1	1	1	1		1	1	1	9
106	스웨덴	1	1	1	1	1	1		1	1	1	9
107	스위스	1	1		1	1	1		1	1	1	8
108	타지키스탄					1	1		1	1	1	5
109	마케도니아	1	1			1	1		1			5
110	태국	1	1			1	1		1	1	1	7
111	토고	1	1		1	1	1		1	1	1	8
112	튀니지	1	1	1	1	1	1					6
113	터키	1	1			1	1		1	1	1	7
114	투르크메니스탄	1										1
115	우간다	1	1			1	1			1		5
116	우크라이나	1				1	1				1	4
117	아랍에미리트	1				1	1			1	1	5
118	영국	1	1		1	1	1		1	1	1	8
119	미국	1	1		1	1	1		1	1	1	8
120	우루과이	1				1	1					3
121	우즈베키스탄	1	1	1	1	1			1	1		7
122	바나투					1						1
123	베네수엘라					1						1
124	베트남	1	1		1	1	1		1	1	1	8
총		107	95	26	59	108	102	12	84	81	65	

주: 1) 이행보고서 제출여부를 1로 표기함.

2) 다수의 결의안 및 중복 제출된 이행보고서는 1회로 집계함.

자료: UN Implementation Reports(<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18. 9. 18).

〈부표 2〉 UN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총 68개국)

	국가		국가
1	아프가니스탄	35	라이베리아
2	안티가 바부다	36	리비아
3	바하마	37	말라위
4	방글라데시	38	말리
5	바베이도스	39	모리타니
6	벨리즈	40	마이크로네시아
7	부탄	41	모잠비크
8	볼리비아	42	나우루
9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43	네팔
10	캄보디아	44	니카라과
11	카메룬	45	니제르
12	카보베르데	46	팔라우
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7	파푸아뉴기니
14	차드	48	세인트키츠네비스
15	코모로	49	세인트 루시아
16	콩고	5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7	코트디부아르	51	사모아
18	콩고민주공화국	52	상투메 프린시페
19	동티모르	53	세이셸
20	도미니카 연방	54	시에라리온
21	엘살바도르	55	솔로몬 제도
22	피지	56	소말리아
23	가봉	57	남수단
24	감비아	58	수리남
25	가나	59	스와질랜드
26	그레나다	60	시리아
27	기니	61	동티모르
28	기니비사우	62	통가
29	아이티	63	트리니다드 토바고
30	온두라스	64	투발루
31	이란	65	탄자니아
32	자메이카	66	예멘
33	케냐	67	잠비아
34	레소토	68	짐바브웨

자료: UN Implementation Reports(<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18. 9. 18).

참고문헌

- 외교부, 「북한 제1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결의 1718호」, 2006. 10. 4.
_____, 「북한 제2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결의」, 2009. 6. 12.
_____, 「북한 제3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결의 2094」, 2013. 3. 7.
_____,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UN 안보리 결의 2087호」, 2013. 1. 22.
_____, 「UN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2016. 3. 3.
_____,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1. 30.
_____, 「UN 안보리 결의 2356호」, 2017. 6. 3.
_____,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6. 12. 2.
_____,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2017. 9. 12.
_____,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2017. 12. 26.

<웹사이트>

- UN, 'Regional Groups', www.un.org/depts/DGACM/RegionalGroups, 검색일: 2018. 9. 18)
- UN, 'UN Charter',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 검색일: 2018. 9. 18.
- UN, 'Implementation Reports',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18. 9. 18.